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6.3월 공포, ’26.7월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12 공포, ’26.12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 ----- ----- ----- ----- ----- -----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u>시·도지사</u>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 ----- <u>시·도지사등</u>

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 다음

의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 ----- 특별시
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선수금)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
6호까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 라. (생략) ②·③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연 락 처	(044) 201 - 4008